

## 원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 직원 채용 공고

원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지역사회 내 육아지원을 위한 거점기관으로 어린이집과 가정양육을 지원하고 다양한 육아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보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사명감을 가지고 근무할 직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 채용할 계획이오니 관심 있는 분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0년 1월 21일  
원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 1. 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 지원 분야 및 자격

채용분야	인원	자격 요건
상담전문요원	1명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상심리사 2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또는 상담·심리분야의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하고 상담 업무와 관련하여 3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2. 전형방법 및 일정

- 전형방법 및 일정

구분	일정	비고
채용공고 및 서류접수	2020.01.21.(화)~2020.02.03.(월) 13시까지	이메일(wjcare@naver.com)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0. 02. 05.(화)	개별통보
면접전형	2020.02.10.(월)~2020.02.14(금)	*센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최종 합격 발표	2020. 02. 17.(월)	개별통보
근무개시일	2020. 03. 01.	

※ 전형 일정은 원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 내부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3. 서류접수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 2020년 1월 21일(화) ~ 2020년 2월 3일(월) 13시까지
- 접수방법 : E-mail 접수(우편, 방문, 대리접수 불가)
- 접수처 : wjcare@naver.com

※ 메일제목에 지원 분야를 정확히 기재요망 - 예시 : ['상담전문요원-○○○' 응시]하고 명기할 것

※ 접수는 마감일시 도착분까지 유효함

○ 제출서류 :

구분	제출서류	비고
1차(서류전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개별자율양식)</li> <li>-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첨부 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li> <li>- 자격증사본</li> <li>- 경력증명서</li> <li>- 최종학교 졸업증명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서에 재직기간 및 담당업무 내용을 기재하여 응시자의 업무경력을 자세하게 소개</li> <li>- 자격요건 및 경력기간은 공고일 기준 (2020. 01. 21.)</li> <li>- 제출서류는 이메일로 파일을 1개로 하여 한 번에 제출함.</li> </ul>
최종합격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li> <li>- 주민등록등본</li> <li>- 통장사본</li> <li>- 반명함판 사진 1장</li> </ul>	

4. 보수기준 및 근로조건

- 급여 : 내부기준, 4대보험 가입, 퇴직연금 적용
- 근무조건 : 일 8시간, 주 40시간
- 근무장소 : 원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
- 주요업무 : 센터 업무 및 분야별 업무분장에 따른 업무
- 근무 개시일 : 최종 합격 후 협의
  - 수습기간은 3개월이며 수습기간동안 업무 수행 등 전반적인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임용을 취소 할 수 있음

5. 유의사항

-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채용할 수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유아보육법 제16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li> <li>2. 「정신보건법」 제3조 제1호의 정신질환자</li> <li>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자</li> <li>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li> <li>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2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li> <li>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다만,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li> <li>7. 제45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폐쇄명령을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li> <li>8. 제54조에 따라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li> </ol> </li> </ul>
--

- 9. 제23조의3에 따른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10. 영유아보육법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중인 자
- 11. 영유아보육법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취소된 후 자격 재교부 기한 2년(제48조 제1항제3호에 따라 취소된 경우는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채용 지원자는 협의된 근무개시 예정일부터 근무가 가능해야 함.
-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양식은 제공되지 않으므로 개별 자율양식 사용함.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응시원서 등에 허위 기재 시 채용이 취소됨.
- 자격증 사본 제출 시, 증빙서류 확인이 불가능한 자격, 면허,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 구비서류 미제출, 연락(휴대폰 등) 불능 등으로 인한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음.
- 임용 후 서류 경력 등이 허위로 판명 될 경우와 결격사유 확인이 될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 성범죄경력조회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전력조회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본 채용공고는 센터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공고 또는 개별통보 후 시행할 예정임.
- 문의) 전화 033-745-0756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